

2017학년도 제3차
<제330차 이사회 회의록>

2017. 8. 24.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7학년도 제3차

〈제330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7. 8. 24(목) 07:30 ~ 09:5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년 8월 16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감사 : 문휘창, 배홍기 (2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장우진, 기획처장 이중섭,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예산팀장 조경숙, 기획팀장 김의섭 (6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신성호 (1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김창현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섭 기획처장, 신성호 아주자동차대학 총장, 한상욱 기획조정실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30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제17-243호(2017.8.16)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2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의안 제4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5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7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8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9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 의안 제10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1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12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등 12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이 2주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사업(WCC)’ 지원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WCC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직제규정 제2조 제3항 제5호에 부설기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육성(WCC)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이 사 최 홍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p> <p>1. 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NC 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p> <p>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p> <p>3. 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p> <p>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p> <p>1. 학술정보센터</p> <p>2. 산학협력단</p> <p>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단</p> <p>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p> <p><u><신 설></u></p>	<p>제2조(기 구)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학처, 산학처, 기획처, 행정처를 둔다.</p> <p>② 부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그 관할은 다음과 같다.</p> <p>1. 교학처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생활관, 창업교육센터, 학생서비스센터, 언론미디어센터, NC S(국가직무능력표준)지원센터,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p> <p>2. 산학처장 : 산업기술연구소,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p> <p>3. 기획처장 : 국제교류센터</p> <p>③ 부설기관은 다음과 같이 둔다.</p> <p>1. 학술정보센터</p> <p>2. 산학협력단</p> <p>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육성(LINC+)사업단</p> <p>4.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단</p> <p><u>5.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육성(WCC)사업단</u></p>
	<p><u>부 칙</u></p> <p><u>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u></p>

제 2 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 정관 제46조와 제48조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위 규정인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학교의 장을 ‘총장’ 으로 명칭 통일하고, 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서 구분하는 ‘교원’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교원의 구분) ① <u>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u></p> <p>1. “<u>전임교원</u>”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p> <p>2. “<u>비전임교원</u>”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원으로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구분한다.</p> <p>②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반전임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일반전임교원 :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p>	<p>제2조(교원의 구분) ① <u>정관 제 46조 제2항의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u></p> <p>1. <삭제></p> <p>2. <삭제></p> <p>② 정년트랙 교원은 일반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일반교원 :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p> <p>2.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2.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p> <p>③ 비정년트랙 <u>전임교원</u>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과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u>전임교원</u>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 비정년 외국인교원 :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p> <p>2.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교원</p>	<p>연구를 담당하는 교원</p> <p>③ 비정년트랙 <u>교원</u>은 비정년 외국인교원과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u>교원</u>의 인사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1. 비정년 외국인교원 :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p> <p>2. 비정년 산학협력중점교원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담당하는 교원</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u>전임교원에 한하여 적용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p>제2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년트랙 <u>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u></p>
<p>제3조(교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교원으로 재직 중에 <u>학교의 장</u>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3조(교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교원으로 재직 중에 <u>총장</u>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4조의2(임용기간) 정년트랙 <u>전임교원</u>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u>전임교원</u>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p> <p>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3. 조교수 : <u>3년</u>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제4조의2(임용기간) 정년트랙 <u>교원</u>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비정년트랙 <u>교원</u>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p> <p>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p> <p>2.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3. 조교수 : <u>4년</u>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p>
<p>제17조(승진·재임용 요건) ① 교원의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p>	<p>제17조(승진·재임용 요건) ① 교원의 승진·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다.</p> <p>1. 승진임용 : 현 직급에서 발표된 연구실적 200%이상</p> <p>2. 재임용 : 현 직급에서 발표된 연구실적 100%이상</p> <p>② 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교원심사평정점수 100분의 60이상으로 하되 <u>학교의 장</u>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③ 교원심사평정기준, 연구실적의 환산율과 실적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1. 승진임용 : 현 직급에서 발표된 연구실적 200%이상</p> <p>2. 재임용 : 현 직급에서 발표된 연구실적 100%이상</p> <p>② 교원의 승진·재임용은 교수업적평가 점수를 기초로 한 교원심사평정점수 100분의 60이상으로 하되 <u>총장</u>이 상향 조정할 수 있다.</p> <p>③ 교원심사평정기준, 연구실적의 환산율과 실적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제4조의2 제3호의 임용기간은 2018년 3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적용한다.</p>

제 3 호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정(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법인 정관 제46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 특별임용교원은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으로 규정하고,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의 자격, 임용, 직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 아주자동차대학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전문

제 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46조 제6항에 따라 아주자동차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특별임용교원의 종류는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으로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원칙) 특별임용교원의 임용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서도 임용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당연 퇴직) 특별임용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제5조(직무) 특별임용교원은 해당 직위의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본 대학 교원과의 공동연구, 특별강의 및 세미나 등 본 대학이 지정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초빙교원

제6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담당과목과 유사한 직무에 근무하거나 당해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7조(임용) ① 초빙교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 초빙교원은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초빙교원은 학기당 1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강의시수는 계약에 의해 정한다.

제9조(보수) 초빙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겸임교원

제10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행

제 정

제11조(임용) ① 겸임교원은 해당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②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 겸임교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교육, 공동연구,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겸임교원은 학기당 1과목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 또는 학생지도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보수) 겸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 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초빙 및 겸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종전 「초빙 및 겸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4 호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신성호 :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교원확보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비수도권 사립전문대학 교원 확보율은 전국 64.6%, 비수도권 64.0%이며, 아주자동차대학은 62.0%로 사립전문대학 평균 교원확보율을 우선 기준으로 하여 2018학년도에는 정년트랙 일반교원 1명을 충원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길주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성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5 호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임용교원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자문교수 및 명예교수를 특별교원에서 특별임용교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기능의 명확화에 따른 임용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세 번째로 연구교수 공개채용 원칙 명시 및 세부기준 규칙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임용교원 징계사유, 종류 등 징계처분에 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용어 정리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회의자료의 신규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 2 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석좌교수 :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있는 인사로서 외부기금 또는 특별채원으로 임용된 교원</p>	<p>제 2 조(특별임용교원의 구분) ① 특별임용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내지 6. <현행과 같음></p>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2. 대우교수 : 학생교육, 연구활동, 진료를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3. 강의교수 :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4. 연구교수 : 특정연구과제 수행, 연구소 운영 등 연구활동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5. 진료교수 : 임상진료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6. 겸임교수 : 공공기관,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산업체의 전문가로서 학생교육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p> <p><u><신 설></u></p> <p>② 석좌교수, 강의교수 및 겸임교수를 제외한 <u>특별임용교원의 직위는 「의료원 교원 임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u></p> <p><u><신 설></u></p>	<p>7. <u>자문교수 : 의료원 외의 기관에 근무하면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교육, 연구 및 진료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교원</u></p> <p>8. <u>명예교수 : 의료원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연구, 진료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교원</u></p> <p>② <u>대우교수, 연구교수, 진료교수의 직급은 「의료원 교원 임용 규칙」을 준용하여 산정된 연구 및 교육경력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u></p> <p>③ <u>제1항의 특별임용교원 외에 특정분야에 관한 연구, 진료 또는 수련을 원하는 수련교원을 들 수 있으며,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p>제 5 조(처 우) 특별임용교원의 권한, 책임 및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p>	<p>제 5 조(처 우) ① 특별임용교원의 권한, 책임 및 의무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교원으로서의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p> <p>② <u>특별임용교원의 휴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직은 예외로 한다.</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 8 조의 2(징계) ① <u>특별임용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령, 규정 또는 업무상 명령 등을 위반하여 의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u> 2. <u>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u> 3. <u>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u> <p>② <u>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구분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u> 2. <u>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일정액의 3분의 1을 감한다.</u> 3. <u>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특별임용교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월 일정액의 3분의 2를 감한다.</u> 4. <u>해임은 특별임용교원 신분을 상실시킨다.</u>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대우교수</p> <p>제 11 조(자격) 대우교수는 <u>전임교원</u>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대우교수</p> <p>제 11 조(자격) 대우교수는 <u>교원</u>에 상응하는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 연구, 진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p>
<p>제 12 조(임 용) ① 대우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우)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우부교수 이상의 대우교수는 이 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용한다.</p>	<p>제 12 조(임 용) ①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② 대우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p> <p>③ 대우교수의 임용기준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u>전임교원에 준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우교수의 임용기준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은 「의료원 교원 임용규칙」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강의교수</p> <p>제 13 조(자격) 강의교수는 <u>전임교원에 상응하는</u>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강의교수</p> <p>제 13 조(자격) 강의교수는 <u>교원에 상응하는</u>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p>
<p>제 14 조(임용) ① 강의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u>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u>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강의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p>	<p>제 14 조(임용) ① 강의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삭 제>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연구교수</p> <p>제 15 조(자격) 연구교수는 <u>전임교원에 상응하는</u>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연구교수</p> <p>제 15 조(자격) 연구교수는 <u>교원에 상응하는</u>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p>
<p>제 16 조(임용) ① 연구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u>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u>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p> <p>②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p> <p><신 설></p>	<p>제 16 조(임용) ① 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u>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p> <p>②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u>외부채원으로 임용된 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u></p> <p>③ 연구교수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u>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진료교수</p> <p>제 17 조(자격) 진료교수는 <u>전임교원에</u> 상응하는 경력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치과의사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을 취득한 자로 <u>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6 장 진료교수</p> <p>제 17 조(자격) 진료교수는 <u>교원에</u> 상응하는 경력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다만, 치과의사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정을 취득한 자로 <u>하고, 임상 진료지원을 위한 특수전문분야의 진료교수는 해당분야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u></p>
<p>제 18 조(공개채용의 원칙) 진료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u><제19조에서 이동></u></p> <p><u><제20조에서 이동></u></p>	<p>제 18 조(임용) ① 진료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채용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u>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u> ③ <u>진료교수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u></p>
<p>제 19 조(임용기간) <u>진료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최초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u></p>	<p>제 19 조 <삭 제></p>
<p>제 20 조(임용절차 및 기준 등) <u>진료교수의 임용절차, 기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 20 조 <삭 제></p>
<p>제 22 조(임 용) ① 겸임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u>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p>	<p>제 22 조(임 용) ① 겸임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삭 제> 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총장에게 제청하며 총장이 임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자문교수</p> <p>제 24 조(자 격) <u>자문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행

현행	개정
	<p>1. 유능한 학자로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교육 및 연구수행에 직접 관계가 있는 자</p> <p>2. 임상 의사 또는 임상간호사로서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학생 및 수련의의 교육에 관하여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p> <p>3. 임상 의사로서 자기환자를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시키고 의과대학과의 협력 하에 환자 진료에 종사할 수 있는 자</p>
<p><신설></p>	<p>제 25 조(임용) ① 자문교수는 주임교수(간호학과장 또는 연구소장 포함)가 추천(임상교원의 경우 병원장 경유)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의료원장이 임용한다.</p> <p>② 자문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신설></p>	<p>제 26 조(처우) ① 기초학 강의를 담당하는 자문교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자문교수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래진료를 하거나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켰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수입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자문교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고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에서 학생 및 수련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p>
<p><신설></p>	<p>제 9 장 명예교수</p> <p>제 27 조(자격) 명예교수는 의료원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연구, 진료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p>
	<p>제 28 조(임용) 명예교수의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현 행	개 정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6 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2001년도에 구입한 의료원 업무차량인 매그너스 차량이 노후가 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사용을 중지하고 본 차량을 대신하여 대여차량으로 운영하기로 한 바, 매그너스 차량에 대하여 불용 처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불용처분으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7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아주대학교 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2016학년도 결산에 의거한 전기이월자금의 예산 반영,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 예산반영, 수입 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 예산 반영, 위상 제고를 위한 JCI 3차 인증 예산의 재조정, 의료외 수입 및 지출의 조정 반영, 내원객 편의 증진 및 의료수입 증대를 위한 리모델링 등 예산의 재조정을 기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047백만원 증가한 593,62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홍 기 : 아주대 병원의 당기순이익이 본예산 대비 41억이 증가한 164억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 의료수익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 1차 추경(안)의 본예산 대비 의료수익 64억 증가는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임금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당기순이익이므로 최대 예비비 50억 수준까지 인건비가 과소 계상된 측면이 있어 1차 추경(안)에 편성된 의료비용 예산이 의료수익 증가 없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비용 집행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 검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최 홍 : 추경 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510,800	504,400	6,400
	의 료 외 수 입	25,548	23,367	2,181
	차 입 금	15,430	14,700	730
	기 타 수 입	3,970	920	3,050
	전 기 이 월 자 금	37,879	35,193	2,686
	계	593,627	578,580	15,047
지 출	의 료 지 출	429,969	426,134	3,835
	의 료 외 지 출	17,864	17,165	700
	고 정 자 산 지 출	27,591	23,211	4,380
	차 입 금 상 환	10,930	10,930	-
	전 출 금	49,836	50,106	(270)
	기 타 지 출	11,960	5,960	6,000
	차 기 이 월 자 금	45,477	45,075	402
	계	593,627	578,580	15,047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제 8 호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받의.

교무처장 장우진 :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는 적정 교원확보를 유지와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및 중앙일보 평가를 대비하고, 우수교원 초빙을 위하여 교수채용 POOL 시스템 활용과 초빙 T/O 완전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의 우수교원 초빙노력을 통한 우수 후보자 확보시 특별채용을 통한 초빙을 검토함과 동시에 교수 초빙 일정을 앞당겨 우수교원 후보자 시장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설학과 운영 및 LINC+ 사업 등 국고사업의 성공적 수행 지원을 위한 비정년트랙 교원 충원 계획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신규임용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년트랙 21명, 비정년트랙 6명 등 총 27명을 증·충원할 예정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총 21명은 전년도 미충원 인원 및 중도사직의 T/O 7명과 내년도 정년퇴직 T/O 14명이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총 6명으로 전년도 미충원 인원 2명과 2017년 중도퇴직 인원 2명 및 신설학과 운영을 위한 신규 정책배정 2명입니다. 세부 임용계획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교원 정원 조정 및 증·충원 심사기준으로 기초교원은 의과대학 2000년 이후 입학한 인재들의 우수성을 고려 M.D.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Ph.D. 교수의 경우 과별 T/O 개념을 떠나 기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분야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기관 차원에서 분야를 정하고 공개채용으로 선발하고자 하며, 임상교원은 특임교원에서 전임교원 전환 요청사항에 대해서 진료실적,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2017학년도 신규 임용 초빙계획은 총 72명으로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8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제 9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장우진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교원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대상이 4명,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대상이 2명이며 대상자 모두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1명으로 재임용 연구점수 기준을 충족하여 이번 이사회에서 재임용 제청되었으며, 특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대우교수 1명입니다. 승진·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상욱 : 의료원 전임교원 신규·승진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임용직급 조교수로 임용 동의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9명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이 4명,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5명입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승진·재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외과학교실	손상용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마취통증의학교실	유지영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영상의학교실	박성훈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간호학과	이영진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 이상 의료원 4명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행

나.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산업공학과	고정한	교 수	2017.9.1 ~ 정년
	환경안전공학과	신귀암	교 수	2017.9.1 ~ 정년
	전자공학과	이정원	교 수	2017.9.1 ~ 정년
	e-비즈니스학과	임재익	교 수	2017.9.1 ~ 정년
	기계공학과	이정일	부교수	2017.9.1 ~ 2023.8.31 (6년)
	약학과	전상민	부교수	2017.9.1 ~ 2023.8.31 (6년)
의 료 원	산부인과학교실	백지흠	부교수	2017.9.1 ~ 2023.8.31 (6년)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정훈	부교수	2017.9.1 ~ 2023.8.31 (6년)
	영상의학교실	김진우	부교수	2017.9.1 ~ 2023.8.31 (6년)
	간호학과	유미애	부교수	2017.9.1 ~ 2023.8.31 (6년)
	뇌과학과	김은영	교 수	2017.9.1 ~ 정년
	순환기내과학교실	윤명호	교 수	2017.9.1 ~ 정년
	성형외과학교실	박동하	교 수	2017.9.1 ~ 정년
	영상의학교실	선주성	교 수	2017.9.1 ~ 정년
	직업환경의학교실	박재범	교 수	2017.9.1 ~ 정년

- 이상 본교 6명 / 의료원 9명 -

다. 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교	소프트웨어학과	Yenewondim Sinshaw	조교수	2017.9.1 ~ 2020.8.31 (3년)
	약학과	김수동	대우교수	2017.9.1 ~ 2019.8.31 (2년)

- 이상 본교 2명 -

제 10 호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이중섭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국고사업 추가 유치에 따른 사업비 지출 예산을 반영, 장학 및 발전기금운용계획 추경에 따른 지출 예산을 반영 및 2016학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이월금 지출 예산을 반영한 편성(안)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89억원이 증가한 2,6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배 흥 기 : 아주대학교 제1차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개선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학부 재학생 감소에 따른 등록금 감소 및 정부 국가 정책에 따른 입학전형료 인하 조정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내역 등이 미반영되어 향후 수입예산 감소에 대응하여 재정 운영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 장 : 감사님 검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선 용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등 록 금 수 입	1,279	1,281	(2)
	전입및기부금수입	958	928	30
	교육부대수입	132	124	8
	교육외수입	29	29	-
	투자외기타자산수입	181	174	7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9	53	46
	계	2,678	2,589	89
지 출	보 수	1,251	1,224	27
	관 리 운 영 비	252	253	(1)
	연 구 학 생 경 비	822	804	18
	교 육 외 비 용	11	11	-
	자 산 취 득	206	180	2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67	50	17
	고 정 부 채 지 출	22	17	5
	예 비 비	4	4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43	46	(3)
	계	2,678	2,589	89

제 11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7.8.31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보직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총장의 제청을 받아 산학부총장에 소프트웨어학과 최경희 교수, 공과대학장에 산업공학과 권용진 교수, 정보통신대학장에 소프트웨어학과 류기열 교수, 자연과학대학장에 생명과학과 김혜선 교수, 인문대학장에 영어영문학과 한호 교수, 다산학부대학장에 화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명현

이사 신상협

학과 박영동 교수, 국제대학원장에 e-비즈니스학과 임재익 교수,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에 약학과 김수동 대우교수, 학생처장에 영어영문학과 조재형 교수를 2017년 9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현 기획처장인 이중섭 교수는 개인사정으로 보직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다산학부대학장인 한호 교수는 이번에 인문대학장으로 임명 제청됨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신 희 택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와 의료원에 큰 도움이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제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산학부총장	소프트웨어학과	교 수	최경희	2017. 9. 1부
공과대학장	산업공학과	교 수	권용진	2017. 9. 1부
정보통신대학장	소프트웨어학과	교 수	류기열	2017. 9. 1부
자연과학대학장	생명과학과	교 수	김혜선	2017. 9. 1부
인문대학장	영어영문학과	교 수	한 호	2017. 9. 1부
다산학부대학장	화학과	교 수	박영동	2017. 9. 1부
국제대학원장	e-비즈니스학과	교 수	임재익	2017. 9. 1부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	약학과	대우교수	김수동	2017. 9. 1부
학생처장	영어영문학과	교 수	조재형	2017. 9. 1부

제 12 호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 사 장 : 2017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511백만원이 증가한 56,77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백만원이 증가한 8,74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이영현 상임이사가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문 길 주 : 추경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7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7학년도 법인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2017학년도 예산액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14,967	14,468	499
	기 부 금 수 입	1,300	1,300	-
	예 금 이 자 수 입	570	570	-
	수 익 재 산 수 입	1,945	1,945	-
	잡 수 입	1	1	-
	원금보존기금인출	4,115	4,115	-
	고 정 자 산 매 각	3,017	-	3,017
	장기차입금차입	16,460	16,460	-
	임대보증금수입	245	255	(10)
	전 기 이 월 자 금	14,157	10,152	4,005
	계	56,777	49,266	7,511
지 출	보 수	773	773	-
	관 리 운 영 비	1,792	1,765	27
	지 급 이 자	398	398	-
	법 정 부 담 전 출	7,496	7,496	-
	경 상 비 전 출	3,241	2,734	507
	예 비 비 등	201	201	-
	원금보존기금적립	3,000	-	3,000
	임 의 기 금 적 립	85	85	-
	고 정 자 산 매 입	20,586	20,586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성협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2017학년도 예산액	증감
	장기차입금상환	1,090	1,090	-
	임대보증금환급	405	255	150
	차기이월자금	17,710	13,883	3,827
	계	56,777	49,266	7,511

▶ 법인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2017학년도 예산액	증감
수입	장례식장운영수입	4,844	4,844	-
	임대료수입	3,542	3,542	-
	관리비수입	17	17	-
	예금이자수입	1	1	-
	잡수입	2	2	-
	전기이월자금	337	316	21
	계	8,743	8,722	21
지출	보수	796	796	-
	관리운영비	1,348	1,348	-
	장례식장운영비	554	554	-
	예비비	100	100	-
	잡손실	2	2	-
	전출금	5,500	5,500	-
	고정부채상환	37	37	-
	고정자산매입	100	100	-
	차기이월자금	306	285	21
	계	8,743	8,722	21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장 : 제330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신상협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30차 이사회회 폐 회를 선언합니다.

(09시 5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7 년 8 월 24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호석
이 사	김 성 진	김성진
이 사	윤 성 복	윤성복
이 사	문 길 주	문길주
이 사	신 희 택	신희택
이 사	김 성	김성
이 사	박 상 일	박상일
이 사	신 상 협	신상협
이 사	이 영 현	이영현
이 사	최 홍	최홍
이 사	김 선 용	김선용
감 사	문 휘 창	문휘창
감 사	배 홍 기	배홍기